무배당 흥국 퇴직적립보험

약관

무배당 흥국 퇴직적립보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에 기초하여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와 퇴직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16조 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보험료의 수령
-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업무협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업무협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업무협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 정한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 ① 회사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1일 및 16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적용이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

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화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 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지환급금)

-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 (별표2 참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출입, 제도변경으로 인한 해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1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7조 (소멸시효)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8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청구서(회사양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 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단,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5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이율의 적용방식

○ 회사는 매월 1일 및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하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

○ 다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적용이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단위보험별 규모	최저한도	최고한도
5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7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80%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80%	기준이율의 190%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200%
100억원 이상		_

(주) 한도 산출이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1년형 기준이율]

o 지표금리(%) = 0.7 × A1 + 0.3 ×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형 기준이율]

o 지표금리(%) = 0.7 × A1 + 0.3 ×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형 기준이율]

o 지표금리(%) = 0.7 × A1 + 0.3 ×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 균값으로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 적용함
 -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 적용함
 - 3.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시장가격조정률

-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1 + i_j) / (1 + i_h)]^{n+m/12}$$

- (1)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 (2) $i_{j} > i_{h}$ 인 경우 또는 퇴직, 전출입, 제도변경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MVA=0으로 합니다.

주)

-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변경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 m: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미만 절상)
- ② i; :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점의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③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잔여보증기간 1년이상인 경우 : i_h = i_{h-1} + (i_{h+1} - i_{h-1}) × m' / (12×n') 잔여보증기간 1년미만인 경우 : i_h = i_{h+1}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
 - · i_{h-1} :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 i_{h+1} :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 m':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 3.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한 해지환급금은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